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303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계절근로자 제외	2

I. 개요

1. 이만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30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만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26.
- (3) 회 부 일 : 2025. 9.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단기체류 근로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류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움. 이처럼 계절근로자는 단기체류 특성상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제 급여는 지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계절근로자 제외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 「출입국관리법」¹⁾에 따른
계절근로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② (생략)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u><단서 신설></u>	③ ----- ----- ----- ----- -----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른 계절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계절근로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1)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의 도입·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22.][시행 2026.1.23.]

나. 검토의견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 분야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최대 8개월)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임.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²⁾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로 구분 시행되고 있음.

<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개요 >

- (개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 분야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최대 8개월)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
 -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신설 ('25. 7. 22.)
- (도입 및 운영 방식)
 - (해외 입국) 국내·외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체결, 결혼이민자의 가족, 국내 유학생(D-2) 부모 초청
 - (국내 체류) 합법체류자(D-1, D-2, D-4, D-10, F-1, F-3, H-2 등) 중 계절근로 참여 희망자
 - (운영 방식) 농·어가(법인 포함) 직고용, 공공형* 계절근로 방식

* 공공형 계절근로제

- (개요) 숙식 제공 및 노무관리가 어려운 영세·고령 농·어가에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농·수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日 단위로 농가에 노동력 제공(농가는 이용료 지급)
- (운영) 농식품부 및 해수부에서 선정('25년 91개소), 국비 50% + 지방비 50% 지원

- (도입 절차) <지자체> 운영계획 수립, 수요조사 후 유치 신청(연 2회) ➡ <출입국관리서> 사전 심사 ➡ <본부>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 인원 배정

*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

- (구성)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주제}),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 행안부 등 과장급 참석
- (기능) 상·하반기 지자체별 계절근로 배정 인원 결정 및 제도 개선 등 현안 논의

자료 : 법무부

2) 김희숙·김주영·임성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22.6.

□ 법무부(주재)·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가 개최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등을 최종 확정함.

- 2024년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계절근로자 67,778명이 배정되어 57,269명이 운영되었으며, 2025년에는 95,584명이 배정되어 9월 기준 67,945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도별 배정·운영 현황 >

(단위 : 명)

구분	배정	운영(해외입국+국내체류)
2017	1,547	1,085
2018	3,655	2,824
2019	4,211	3,497
2020	5,806	223
2021	7,340	1,850
2022	19,718	12,027
2023	40,647	32,837
2024	67,778	57,269
2025.9	95,584	67,945

자료 : 법무부

□ 이와 같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당초 체류자격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단기체류자격), 별표2(장기체류자격)의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 자격³⁾ 규정과 내부지침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법령상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2025년 7월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 등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2026년 1월 시행 예정⁴⁾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11.>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5. 단기취업 (C-4)	가.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5. 27.>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0의2. 계절근로 (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4)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0992호, 2025.7.22., 일부개정][시행 2026.1.23.]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의 도입·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③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
 2. 계절근로자의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경과 >

- '15.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 시행 [단기취업(C-4, 90일)]
- '17.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식 시행
- '19. 12. 계절근로(E-8, 5개월) 체류자격 신설
- '22. 1. 국내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허용
- '23. 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체류기간 상한 8개월까지 연장)
- '25. 7. 계절근로제도 운영 근거 등 신설 「출입국관리법」 개정

자료 : 법무부

□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에서 준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5)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으로

3.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⑦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22.]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

서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이 있는 경우⁶⁾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위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됨.

- 그에 따라 2025년 9월 기준 계절근로 외국인 중 17,349명이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을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4. 10. 4.>

체류자격(제61조의2제2항 관련)

외국인의 체류자격(기호)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4.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6)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 문언상 장기요양보험가입에서 제외되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른 계절근로자”는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E-8)뿐만 아니라 국내체류 외국인이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계절근로자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어 이하에서는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중심으로 검토함. 참고로,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 가입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등으로 표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현황 >

(단위: 명, 각 연도말 기준)

구분	합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계	가입자	피부양자	
'25.9	17,349	2,283	2,265	18	15,066
'24	5,439	526	508	18	4,913
'23	371	371	355	16	-
'22	97	97	87	10	-
'21	87	87	74	13	-
'20	104	104	89	15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노인등)⁷⁾로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아야 함⁸⁾.

□ 그런데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의 체류기간은 최대 8개월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법무부, 2025.9.)’에 따를 때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5세 미만⁹⁾으로 현실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기 곤란함.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제15조(등급판정 등)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9)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법무부, 2025.9.)’은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지침으로 ① 대한민국 기초지자체와 해외 기초지자체(지방정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하는 경우 25세 이상 50세 이하, ②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방식의 경우 19세 이상 55세 이하, ③ 유학생의 부모 초청 방식의 경우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두고 있음. 다만,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지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일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연령상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받은 외국인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수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2024년에는 6억 3,900만원의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되었고, 2025년에는 9월 기준 9억 1,800만원의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되었음.

< 최근 5년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 >

(단위: 백만원, 연간 누적 기준)

구분	지역	직장	계
2020년	-	33	33
2021년	-	38	38
2022년	-	43	43
2023년	-	120	120
2024년	378	261	639
2025년 9월	616	302	918

주1) 공단 부과통계(DW) 기준임

주2) 직장보험료의 경우 사용자부담금 포함

주3) 계절근로자: 체류자격 E-8 기준임

주4) 단위 미만의 수는 반올림되어 있음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즉, 개정안은 이처럼 외국인 계절근로자(E-8)는 단기 체류하는 특성상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제 급여는 수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률로써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각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기간이 길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수 있으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해서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에서 제외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외국인 체류자격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및 장기요양보험 수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간 누적 기준)

체류자격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				장기요양보험 수급액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2024년	2025년 9월	2024년	2025년 9월	2024년	2025년 9월	2024년	2025년 9월
난민(C7)	17	14	63	54	-	-	-	-
문화예술 (D1)	4	2	1	1	-	-	-	-
유학(D2)	13,711	11,872	821	856	-	-	-	-
기술연수 (D3)	10	6	67	46	-	-	-	-
일반연수 (D4)	2,452	2,283	83	79	-	-	-	-
취재(D5)	7	7	7	7	-	-	-	-
종교(D6)	98	79	17	12	1	19	0.2	0.1
주재(D7)	26	17	626	476	-	-	-	-
기업투자 (D8)	178	174	2,700	2,266	-	-	24	19
무역경영 (D9)	239	185	93	59	-	-	-	-
구직(D10)	2,285	1,964	434	399	-	-	-	-
교수(E1)	10	8	913	675	-	-	-	-

체류자격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				장기요양보험 수급액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2024년	2025년 9월	2024년	2025년 9월	2024년	2025년 9월	2024년	2025년 9월
회화지도 (E2)	155	92	3,545	2,671	-	-	-	-
연구(E3)	40	26	1,555	1,126	-	-	-	-
기술지도 (E4)	3	3	34	29	-	-	-	-
전문직업 (E5)	6	3	43	30	-	-	-	-
예술흥행 (E6)	399	311	137	104	-	-	-	-
특정활동 (E7)	387	402	16,963	17,661	-	-	-	-
계절근로 (E8)	378	616	261	302	-	-	-	-
비전문취업 (E9)	6,656	5,192	24,106	19,332	-	-	15	19
선원취업 (E10)	599	504	1,388	1,062	-	-	-	-
방문동거 (F1)	2,959	1,958	389	283	160	165	330	226
거주(F2)	1,205	1,036	6,436	5,800	285	247	228	185
동반(F3)	310	435	95	120	18	28	17	43
재외동포 (F4)	35,108	27,460	56,954	42,404	19,512	17,925	29,249	26,120
영주 (F5)	4,317	3,932	30,933	26,040	2,592	2,448	1,042	892
결혼이민 (F6)	1,811	1,513	13,479	10,653	852	817	180	168
기타(G1)	125	102	1,707	1,609	10	-	38	31
관광취업 (H1)	185	148	63	51	-	-	-	-
방문취업 (H2)	7,712	5,320	6,525	4,244	331	215	240	129
기타 ¹⁰⁾	16	9	288	181	-	-	-	-
계	83,408	65,673	170,726	138,632	23,761	21,864	31,363.2	27,832.1

주1) 공단 부과통계(DW) 기준임

주2) 단위 미만의 수는 반올림되어 있음

주3)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의 경우 사용자부담금 포함된 금액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또한, 현행법 제7조제4항¹¹⁾은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¹²⁾으로 정

10) 외교(A1), 공무(A2), 협정(A3) 등 보험료 부과 금액이 미미한 체류자격들의 묶음을 말함.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한 측면이 있음.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계절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서 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등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 중이므로, 타 외국인근로자 등과 달리 계절근로자(E-8)만 법률로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직장
· 지역가입자를 모두 포함하고, 이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으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가입 제외 절차가 있음에도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른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외국인의 가입 제외를 법으로 당연 적용할 경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3